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7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양부남·조인철·이광희

신정훈 · 조계원 · 민형배

전진숙 • 홍기원 • 위성곤

안도걸 · 정진욱 · 박희승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(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)과 상대보호구역(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)으로 설정하고 상대보호구역의 경우,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.

구체적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서, 심의 대상 행위 및 시설에고압가스·도시가스·액화석유가스 제조·충전·저장시설, 폐기물 수집·보관·처분장소, 총포·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, 감염병 격리소,담배자동판매기, 게임제공업, 게임물시설, 무도장, 경마장, 사행행위영

업, 노래연습장, 비디오물감상실업, 단란·유흥주점영업, 숙박업,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, 레미콘 제조업, 중독자재활시설, 카지노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(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2호).

그러나 봉안시설이 상기 열거된 시설에 비추어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유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로 지정하였음. 그러나 종교시설 내 설치된 봉안시설은 종교의 자유와 결합된 고인에 대한 추모공간이자 교육환경 측면에서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・철학적 성찰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, 지역교육환 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 단서 중 "제14호부터"를 "제9호의 봉안시설 중 「건축법」 제2 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, 제14호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	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		
금지행위 등) 누구든지 학생의	금지행위 등)		
보건ㆍ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			
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			
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			
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			
만, 상대보호구역에서는 <u>제14호</u>	제9호의		
<u>부터</u>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	봉안시설 중 「건축법」 제2조		
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	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		
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	내 설치하는 봉안시설, 제14호		
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	<u>부터</u>		
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			
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			
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			
제외한다.			
1. ~ 32. (생 략)	1. ~ 32. (현행과 같음)		